

공개토론회 자료

수요일 夕刊

## 2007~2011년 국가재정운용계획

---

### - 총괄 분야(III) -

- 2007년 3월 21일(수) 10:00 ~12:00
- 기획예산처 MPB Hall (청사 별관 2층)

국 가 재 정 운 용 계 획  
지방재정조정 분야 작업반



## 프 로 그 램

---

09:30 ~ 10:00      등록 및 네트워킹

10:00 ~ 12:00      사회투자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선

사 회 : 노기성 (KDI 선임연구위원)

발 표 : 배득중 (연세대학교 교수)

토 론 : 강호인 (기획예산처 전략기획관)

김현아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이상용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재원 (부경대학교 교수)

주만수 (한양대학교 교수)

허우석 (광주광역시 북구청 주민생활지원국장)

# 목 차

토론주제 : 사회투자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선

I. 문제의 제기 .....	1
II. 사회투자 관련 지방재정지원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	4
III. 지방재정조정제도 개편방안 .....	11
1. 장단기 전략의 기본 구상 .....	11
2. 단기 전략 .....	12
3. 장기 전략 .....	13
참고 1 지방재정지원제도의 추이('06 추경 포함) .....	15
참고 2 '07년 교부세 시도별 배정내역 .....	16
참고 3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 .....	17
참고 4 기준재정수요액 측정단위 비교 .....	19

# 토론주제

사회투자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선

# I. 문제의 제기

## □ 고령화, 양극화 시대에 사회투자의 중요성 증대

- 전통적, 소비적 복지국가는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등 새로운 사회적 위협과 세계화, 정보화 등 새로운 환경에 대처하는데 한계
- Giddens는 “인적자본과 사회적 자본에 투자함으로써 시민들이 더 나은 일자리를 갖게 하여, 경제발전과 사회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사회투자국가론(1994)을 제시
- 성장둔화, 양극화를 극복하고 지속성장과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복지, 고용, 교육, 사회적 자본 등 사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필요
- OECD가 추계하는 한국의 공공사회지출은 GDP 대비 5.7%(2003)로 매우 낮은 편이나, “비전2030”은 한국의 공공사회지출을 2030년에 OECD 회원국의 2001년도 평균수준인 21.2%로 증대할 것을 목표로 함.

〈표 1〉 GDP 대비 공공사회지출 국제비교

('03년 기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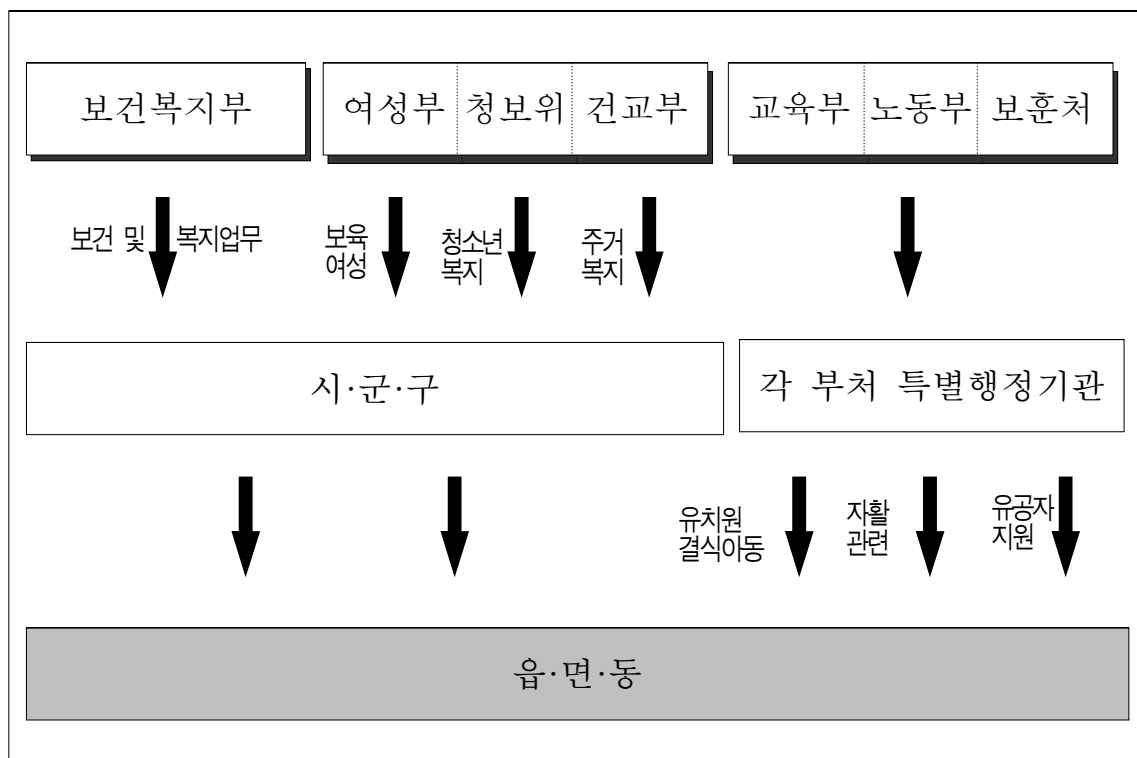
스웨덴	독일	영국	미국	일본	한국	OECD평균
31.3	27.6	20.1	16.2	17.7	5.7	20.7

자료: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2006(사회지출의 정의: 자원의 개인간 재분배를 위하여 정부가 수행하거나 법률로 규정한 사업을 통해 제공한 현금급여, 현물급여, 그리고 사회목적의 조세지출).

□ 사회투자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

- 사회투자 전달체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회복지공무원의 87%가 읍, 면, 동에 배치되어 있음

[그림 1] 사회투자 전달체계 흐름도



자료: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2004)

- 사회투자의 제1차적 역할은 보충성(subsidiarity)의 원리에 따라 최종수혜자와 직접 접촉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

- 보충성의 원리: 유럽통합 과정에서 처음 등장한 개념으로서, 정책결정은 그 형성과정과 실행의 유효성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행정기관에서 실천(유럽위원회, 1975)

- 자치단체는 사회투자 최종수혜자의 수요파악과 효과적인 서비스 전달에 비교우위가 있으므로, 중앙정부는 지원하는 역할에 그칠 것
- 한국의 현실은 보충성의 원리와 달리, 중앙정부가 정책적 의지로 사회투자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의무규정에 따라 수동적으로 재정을 분담하는 상황
  - 사회투자 증대에 따른 지방비부담 증가로 구축(驅逐)효과가 발생하여, 주민숙원사업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재원이 줄어들음
  - 자치단체가 주체적으로 사회투자를 하지 않고, 중앙정부에 의존하여 소극적인 대응을 하는 경향
- 자치단체의 주체성과 책임성을 강화 위해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선
  - 국가적 차원에서 사회투자의 지속적인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해소하면서, 자치단체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
  - 자치단체간 사회투자 부담의 형평화 도모

## Ⅱ. 사회투자 관련 지방재정지원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지방의 사회개발비 지출

- 자치단체의 총지출(순계) 규모는 2000년의 65조원에서 2005년의 107조원(GDP 대비 13.3%)으로 증가(연 10.5% 증가)
- 같은 기간 중 사회보장비 지출은 6.4조원에서 12.8조원으로 연 14.9%씩 증가하였고, 사회보장비를 포함한 사회개발비는 30.3조원에서 53.3조원으로 연 12.0%씩 증가
  - 사회개발비: 사회보장, 교육문화,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표 2〉 자치단체의 기능별 지출 현황

(단위: 조원, %)

	'00	'01	'02	'03	'04	'05	증감율(%)
총지출(순계)	65.0	79.1	91.1	97.5	98.8	107.0	10.5
▪ 사회개발비	<b>30.3</b>	38.7	42.7	46.8	48.0	<b>53.3</b>	12.0
(비 중)	<b>(47)</b>	(49)	(47)	(48)	(49)	<b>(50)</b>	
- 사회보장비	6.38	8.04	8.64	9.42	10.6	12.8	14.9
	(10)	(10)	(9)	(10)	(11)	(12)	-
▪ 경제개발	21.0	23.6	30.5	30.8	28.9	30.5	7.7
(비 중)	(32)	(30)	(33)	(32)	(29)	(28)	
▪ 기 타	13.7	16.8	17.9	19.9	21.9	23.2	11.2
(비 중)	(21)	(21)	(20)	(20)	(22)	(22)	

□ 중앙정부의 사회투자 증액에 따라 지자체의 지방비 부담도 증가

- 사회투자 중 고용과 교육 관련 국고보조 사업들은 중앙정부가 전액 보조 하는 경우가 많으나, 사회복지 관련 국고보조금들은 대부분은 부분 보조

<표 3> 사회투자 관련 국고보조금 사업의 기준보조율(예시)

(단위: %)

국고보조사업	기준보조율	국고보조사업	기준보조율
기초생보-생계급여	서울: 50, 지방: 80	지역실업자지원사업	80
의료급여	서울: 50, 지방: 80	장애인생활시설확충	50
경로연금	서울: 50, 지방: 70	아동복지시설확충	50
부랑인보호시설운영	서울: 50, 지방: 70	정신요양시설확충	50
영유아보육	서울: 20, 지방: 50	보육시설기능보강	40
보육시설운영지원	서울: 20, 지방: 50	요보호아동그룹홈 지원확충	40

- 자치단체는 자체재원(자체세입 + 세외수입) 및 자주재원(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 재정보전금)을 활용하여 사회투자 사업에 대한 지방비부담분을 충당하여야 하여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정도

-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들은 가용재원의 증가 속도가 연평균 14.9%로써, 사회투자 관련 지방비부담액의 증가 속도가 연평균 16.7%임을 감안할 때, 비용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 것
- 2005년 가용재원 규모는 66.7조원이지만, 사회투자의 지방비부담액은 2.5조원이고, 2000-2005년 기간 중 가용재원 대비 지방비부담액의 비율도 3~4% 수준을 계속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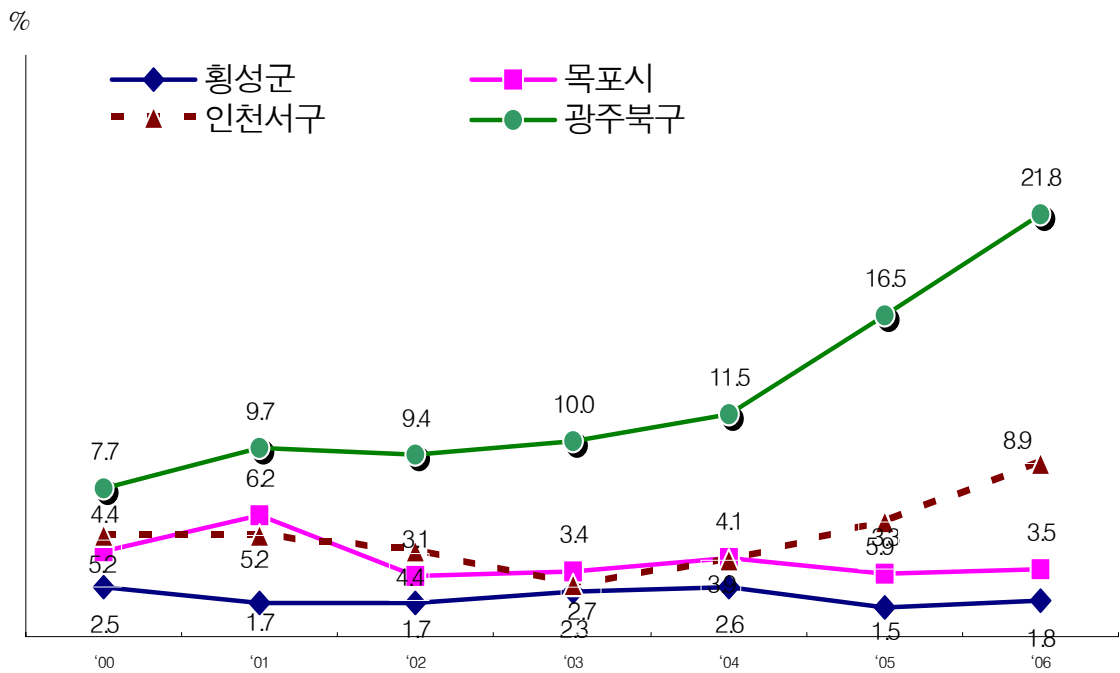
〈표 4〉 사회복지비 국고보조사업 부담비율 추이

(단위: 조원, %)

	'00	'01	'02	'03	'04	'05	증감율
▪ 세입(순계)	65.1	79.1	91.1	97.5	98.9	107.1	10.5
- 자체재원+자주재원(A)	51.3	62.8	70.3	78.2	81.4	89.9	11.9
▪ 경직성지출(일반행정, 민방위비 등)(B)	13.7	16.8	17.9	19.2	20.8	23.2	5.1
▪ 가용재원(C=A-B)	37.6	46.0	52.4	58.9	60.6	66.7	14.9
▪ 사회복지비 국고보조사업비	3.7	5.4	6.5	7.0	8.0	8.0	16.2
- 지방비 부담액(D)	1.1	1.6	1.9	2.1	2.5	2.5	16.7
▪ 지방비부담비율(E=D/C)	3.0%	3.4%	3.7%	3.6%	4.1%	3.7%	-

\*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비 및 지자체 매칭액은 예산개요('01~'06)  
국고보조사업 확정액 중 보건복지부, 여성부, 노동부 소관 사업

[그림 2] 자치단체별 지방비부담비율 변화



□ 국지적으로 편차가 큰 지방비부담비율

- 일부 기초자치단체(특히 특광역시의 자치구)의 경우, 가용재원 대비 사회투자 관련 지방비부담비율이 매우 높아서 해당 자치구가 애로를 호소

<표 5> 시·군·구별 사회보장비, 사회투자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부담비율 평균 ('06년)

(단위: 조원)

	시	군	자치구
▪ 총지출	35.6	17.5	11.0
- 사회보장 (비중, %)	4.5 (12.6)	2.1 (11.9)	3.3 (29.8)
▪ 지방비 부담비율(%)	3.1	3.3	10.9

- 특히 애로가 많은 지역은 광주 북구 21.8%, 광주 광산 20.1%, 서울 노원구 20.8%, 서울 구로구 20.5% 등
- 여건이 유사한 자치단체들 가운데서도 지방비부담비율의 차이가 많은 경우가 발견됨
  - 인접지역이며, 기초생활수급자의 인구대비 비율이 비슷한 지역이라 하더라도 지방비부담비율은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
    - \* 지방비부담율: 대구 달서구 23.3% > 대구 달성군 3.3%
  - 1인당 세출예산액이 비슷하지만 인구대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에 따라 지방비부담비율이 차이 나는 경우
    - \* 지방비부담비율: 광주 북구 21.8% > 인천 연수구 9.4%
  - 복지수요가 비슷하더라도 자체재원의 비중 차이에 따라 지방비부담율이 차이 나는 경우
    - \* 대전 대덕구 10.1% > 인천 중구 8.4%

- 경기도내 용인시(최저지역)는 가용재원 대비 지방비부담비율이 1.0%(2006)이지만, 연천군(최고지역)의 지방비부담비율은 3.2%
- 전남 시 지역 중 광양시(최저지역)은 가용재원 대비 지방비부담비율이 2.4%(2006)이지만, 나주시(최고지역)의 지방비부담비율은 3.6%
- 군 지역 중 충남 태안군(최저지역)의 가용재원 대비 지방비부담비율이 1.1%(2006)이지만, 경북 성주군(최고지역)의 지방비부담비율은 5.9%

□ 특정 지역 사례분석 (광주 북구- '06년 기준 지방비부담비율이 자치구 중 3위)

- '03년 이후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이 빠르게 증가
  -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 ('00) 380 → ('06) 832억원, 연평균 13.9% 증
  - 지방비 부담액 : ('00) 36.1 → ('06) 117.9억원, 연평균 21.8% 증
- 반면, 자체재원+자주재원(교부금+교부세)은 연평균 4.2%증가에 불과 (재정자주도 하락(66%('00)→52%('06))

\* 일반회계세입 1,230억('00) → 2,108억('06), 연평균 9.4%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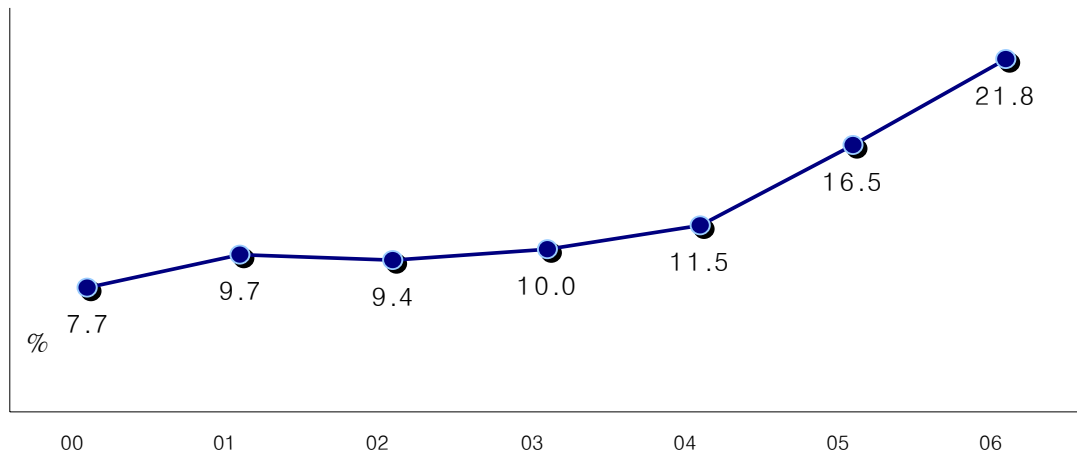
- 자체재원(지방세+세외수입) 447억('00) → 563억('03) → 447억('06)\*, 연평균0% 증가

- 자주재원(교부금+교부세) 359억('00) → 645억('06), 연평균 10.3% 증가

- 보조금 416억('00) → 1,016억('06), 연평균 16.0% 증가

\* 재산세 일부 중부세 전환(05)으로 지방세 감소, '03이후 지방경기악화로 세외수입 (사용료, 수수료 수입, 순세계 잉여금 등) 감소

- 그 결과 사회투자 관련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비율은 급격히 상승



- 국고보조사업 중 주요 증가사업은 기초생활보장과 영유아 보육료 지원

(단위: 백만원)

	'02	'04	'06	연평균 증가율
▪ 지방비 부담	4,946	7,409	11,792	24.3
- 기초생활보장	2,369 (47.9)	3,000 (40.5)	4,216 (35.8)	15.5
- 영유아 보육료	1,851 (37.4)	2,921 (39.4)	6,684 (56.7)	37.9
- 경로연금	123	163	190	11.0

\* ( ) 안은 전체 지방비 부담중 해당사업의 비중

- 특광역시의 일부 자치구에서 사회투자 지방비부담비율이 높은 이유

- 특광역시의 특정 지역에 저소득층, 영유아수, 노령인구 등 사회투자 수혜계층이 집중되는 현상이 있는데, 현행의 지방재정조정제도가 이런 특수성을 적절히 반영해주고 있지 못함.

- 최근 기초 시군은 교부세 증가로 재정자주도가 증가(횡성: 60% →62%, 목포: 60%→69%)하였으나, 광역시의 일부 자치구는 광역시로부터 재원조정교부금이 불충분 하여 재정자주도가 하락(광주북구: 60%->52%, 인천서구 81%->59%)
- 기초생활보장대상자 및 영유아가 많은 지역에서 기초생활보장 및 영유아 보육료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해당 지역의 지방비부담액이 타지역에 비하여 더욱 증가

#### □ 대응전략 모색

- 현재의 국지적인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안 모색할 필요
  - 가용자원대비 사회투자 지방비부담비율은 해당 자치단체의 “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기초단체별로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상황은 적절히 조절해줄 필요가 있음.
  - 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제도 등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을 통해 문제 지역에 대한 대응 모색
- 중장기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대응 필요
  - 향후 중앙정부의 사회투자 계획 및 재원증가 소요를 감안할 때, 자치단체의 사회투자에 대한 지방비부담도 증가할 전망
  - 자치단체의 가용재원은 '05-'10년 기간 중 연평균 9.1% 증가할 전망이지만, 지방비부담액은 18.3% 증가하여, 지방비부담을 평균이 2010년에는 5.6%로 증가 예상
  - 자치단체의 지방비부담비율 증가로 주민숙원사업 등에 대한 구축효과가 증대되어서, 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애로 가증될 우려
  - 중기 전망에 따른 대응을 위해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이 필요

### Ⅲ. 지방재정조정제도 개편방안

#### 1. 장단기 전략의 기본 구상

##### □ 단기전략의 개요

- 지방비부담비율이 높은 일부 자치구의 어려움을 완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 소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자치구간 보조율을 차별화
- 자치구의 주요 재원인 특광역시 조정교부금 제도의 개선을 유도

##### □ 장기전략의 개요

- 지방의 자율성 및 책임성 제고를 통해 사회투자 확대를 촉진
- 사회투자 소요와 의지가 많은 지자체에게 더 많은 재원을 배분하기 위해 보통교부세 제도를 개편
- 사회투자 사업성격을 기본 사회투자과 선택 사회투자과로 구분하고, 기본 사회투자는 국가전체적인 통일성을 유지하는 반면, 선택 사회투자는 지역별로 특성화, 차별화하도록 함
- 장기적으로 자치단체가 자체재원을 확충하여 주체적으로 사회투자를 확대하는 기반을 조성

## 2. 단기 전략

### 가. 현재 관계부처에서 추진중인 방안들

- 서울시의 재산세 50%를 공동세로 전환하여 자치구별 재정력에 따라 배분
- 종합부동산세 증가분을 교육, 복지 등 사회투자 분야에 활용

### 나. 이에 더해 더욱 직접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들도 추가로 검토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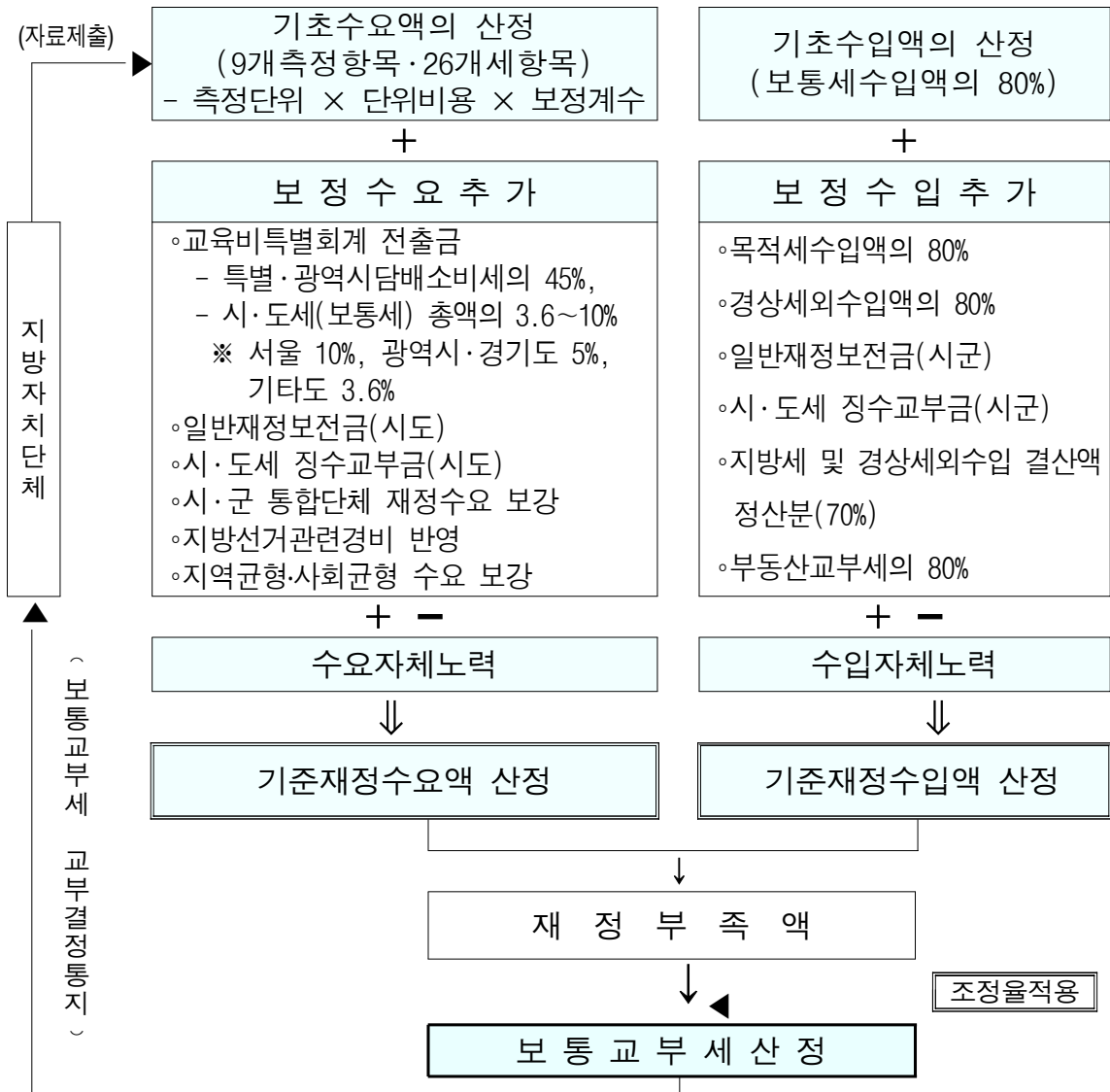
- 특광역시의 자치구별 보조율 차별화
  - 현행 기준보조율은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함
  - 서울 노원구, 서울 강서구, 광주 북구 등 사회투자 지방비부담 수요가 높은 자치구에 더 높은 보조율을 적용하는 방안 강구
-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 유도
  - 현행 조정교부금 배분 방식은 사회투자수요 증가를 반영하지 못함.
  - 시군은 교부세를 중앙에서 직접 배부하지만, 자치구는 직접 배부의 대상이 아니어서, 특광역시의 조정교부금을 통해 배분
  - 사회투자에 대한 자치구의 재정수요를 반영하도록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을 유도

### 3. 장기 전략

#### 가. 보통교부세 제도의 개선

□ 사회투자 소요와 의지가 많은 지자체에 더 많은 재원이 배분되도록  
 교통교부세 제도개선

○ 보통교부세 산정 흐름도



## 나. 지역별 특성화, 차별화된 사회투자 유도

- 일부 사업에 대한 기준보조율을 기초단체의 재정력에 따라 세분화
- 연관성이 높은 사회투자 사업들의 보조금을 통합·포괄화

## 다. 자체재원 확충을 통한 사회투자 확대

- 새로운 지방세 부과는 한계 있으므로 중앙정부와 세원공유 필요
  - 바람직한 공유대상 재원은 1) 전국적으로 고른 분포를 갖는 재원이면서, 2) 광역과 기초단체에서 동시에 재원증가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재원
  - 지방소비세 혹은 지방소득세 도입 및 주행세 확대에 관한 검토 필요

참고 1

지방재정지원제도의 추이('06 추경 포함)

(단위: 억원)

구 분		2005예산	2006예산	비 고	
일반 자치 단체 지원	지방 교 부 세	법정교부금	201,358	214,614	내국세의 19.24%('06부터) *보통(18.7), 특별(0.7), 분권(1.0), 중부세교부금(1.0조원)
		증액교부금 (일반회계)	-	-	'05년부터 폐지
		농특세 증액교부금	-	-	'05년부터 폐지
		계	201,358	214,614	
	지방양여금	-	-	'05년부터 폐지	
	국고보조금	112,312	145,391	교육부 소관을 제외한 전소관 국고보조금	
	균특회계 (교육균특제외)	54,880	58,967	주세100% + 일반회계전입금 + 특별회계전입금(농특, 농특세, 토특, 통특)	
	계	368,550	419,072		
교육 자치 단체 지원	교 부 금	법정교부금	237,367	245,966	내국세의 19.40%('05부터) + 교육세 전액
		보급교부금	-	-	'05년부터 폐지
		증액교부금	-	-	'05년부터 폐지
		계	237,367	245,966	
	지방교육양여금			'05년부터 폐지	
	국고보조금	1,107	2,683	교육부 소관 국고보조금(균특포함)	
	계	238,474	248,649		
합 계	607,024	667,721			

**참고 2**

**'07년 교부세 시도별 배정내역**

(감액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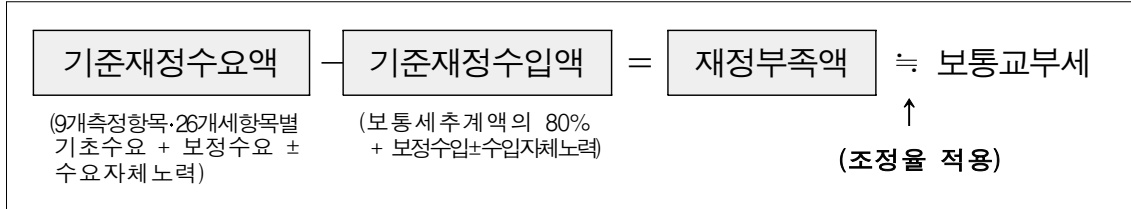
(단위: 억원)

구 분	보통교부세	시도 본청분	시 분	군 분	분권교부세
합 계	198,421	47,341	71,620	79,460	11,053
서울		-			
부산	2,895	2,378	-	517	
대구	3,412	2,650	-	762	
인천	1,458	-	-	1,458	
광주	2,935	2,935	-	-	
대전	1,178	1,178	-	-	
울산	1,456	1,125	-	331	
경기	13,205	-	10,044	3,161	
강원	21,819	4,005	8,399	9,415	
충북	15,499	3,208	4,518	7,773	
충남	17,262	3,121	6,109	8,032	
전북	22,567	4,762	9,970	7,835	
전남	31,167	5,995	6,813	18,359	
경북	32,571	6,168	14,719	11,684	
경남	25,112	3,931	11,048	10,133	
제주	5,885	5,885	-	-	

\* 불교부단체 (12개): 광역단체(3) : 서울, 인천, 경기,  
 기초단체(9) : 수원, 안양, 성남, 부천, 안산, 고양, 과천, 용인, 화성

### 참고 3

###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



#### ① 기준재정수요액 : 기초수요액 + 보정수요액 + 수요자체노력

① 기초수요액 :  $\Sigma(\text{측정항목별 측정단위수치} \times \text{단위비용} \times \text{보정계수})$

- 측정항목 : 지자체 세출예산을 기능별·성질별로 표준분류 설정한 재정수요항목(9개 항목·26개 세항목]
- 측정단위 : 측정항목별 기준단위
- 단위비용 : 측정단위별 1단위당 적용되는 표준적인 단가

$\text{※ 단위비용} = \frac{\text{동종 자치단체의 표준행정수요액의 합}}{\text{동종 자치단체의 측정단위수치의 합}}$
--

- 보정계수 : 자치단체의 사회적·자연적 조건의 차이를 반영

$\text{※ 보정계수} = \frac{\text{당해단체의 단위비용(표준행정수요액 / 측정단위수치)}}{\text{동종단체의 표준단위비용}}$
---

#### ② 보정수요액 : 기초수요액외 법령규정 등에 의한 별도 추가수요

- 재정보전금 : 일반재정보전금(광역시세·도세의 27%) 및 정산분
- 시도세 징수교부금 : 시·도세(보통세)의 징수액 3.6~10%
-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 특별시·광역시 담배소비세의 45%, 시·도세의 3.6~10%
- 시·군 통합단체 재정수요 : 여수시만 해당(기초수요액의 3%)
- 지방선거관련경비 정산분 : '06년 동시지방선거 소요비용

- 지역균형(특수)수요 : 도서, 오지 등 낙후지역, 개발규제지역 등 반영
- 사회복지균형수요 : 등록외국인, 초고령지자체 등에 대한 수요반영

③ 수요자체노력 : 4개 항목 반영

- 경상경비 절감, 지방상수도요금 현실화, 읍면동 통합유도, 지방청사(면적)관리 운영

② 기준재정수입액 : 기초수입액 + 보정수입액 + 수입자체노력

① 기초수입액 : 당해년도 보통세\* 추계액 × 80%

- \* 보통세(10개 세목) :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레저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주행세, (농업소득세)

② 보정수입액

- 목적세 수입 : 당해년도 목적세 추계액 × 80%
- 경상세외수입 : 당해년도 경상세외수입 추계액 × 80%
- 일반재정보전금(시군별) : 당해년도 시도세 추계액 × 27%(47%) × 90%
- 시도세징수교부금(시군별) : 당해년도 시도세 추계액 × 3%
- 지방세 및 경상세외수입 결산액 정산분 : (전전년도 지방세 및 경상세외수입 결산액 - 추계액) × 70%
- 부동산 교부세 : 당해년도 부동산교부세 수입 추계액 × 80%

③ 수입자체노력 : 6개 항목 반영

- 지방세 징수율 제고, 주민세 개인균등할 인상, 탄력세율 적용, 경상세외수입 확충, 지방세 체납액 축소, 지방세 세원(새로운 형태의 부과세원) 발굴

③ 조정을 산정

- 보통교부세 총액이 재정부족액 총액에 미달하는 경우, 조정을 산정하여 적용

· 2006년 조정율 =  $\frac{\text{보통교부세 총액 } 177,543\text{억원}}{\text{재정부족액 총액 } 206,736\text{억원}}$  = 0.859

※ 연도별 조정율 :

	<u>2000</u>	<u>2001</u>	<u>2002</u>	<u>2003</u>	<u>2004</u>	<u>2005</u>	<u>2006</u>
	0.925	0.777	0.775	0.764	0.788	0.862	0.859

참고 4

기준재정수요액 측정단위 비교

지방교부세			서울시 조정교부금		
대항목 (9개)	세부항목 (26개)	측정단위	대항목 (6개)	세부항목 (20개)	측정단위
일반행정비	인건비	· 공무원 수	의회운영비		· 의원정수
	일반관리비	· 공공청사보유 면적 · 인구수 · 지방의원수		일반행정비	기획관리비
사회보장비	일반사회복지비	· 사회복지시설 면적 · 인구수	사회복지비		내무행정비
	노인복지비	· 노령인구수 · 노인복지시설 면적 · 경로당수		재무행정비	· 행정구역면적 · 과세건수
	아동복지비	· 아동인구수 · 아동복지시설 면적		복지사업비	· 저소득 가구수 · 인구수
	장애인복지비	· 장애인등록자수 · 장애인복지시설 면적		보건위생비	· 행정구역 면적 · 가구수 · 보건소공무원수
	기초생활보장비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수			
보건 및 생활 환경개선비	보건위생비	· 보건시설 면적 · 인구수 · 무료예방접종인원수	환경녹지비	· 환경미화원수 · 녹지대면적 · 도로시설물 연장	
	청소비	· 생활폐기물배출량 · 행정구역 면적 · 가구수			
	환경공해비	· 수질관리시설 면적 · 인구수			
	공원녹지비	· 공원면적 · 인구수			
국토자원 보전개발비	상수도비	· 상수도관로 연장 · 인구수	지역개발비	도시개발비	· 도로 면적 · 시가화가능면적
	도로개발비	· 미개발도로 면적		건설사업비	· 가로등·보안등 수 · 도시계획 면적 · 도로시설물 연장
	도로유지비	· 도로면적			
	하천비	· 하천길이			
지역사회개발비	도시계획비	· 도시지역 면적 · 인구수	차우하수사업비	· 하수도의 연장 · 빗물펌프장 · 도시계획 면적	
	지역개발비	· 행정구역 면적 · 인구수			
	지역정보화비	· 가구수			
지역경제개발비	교통관리비	· 자동차대수 · 포장도로 면적 · 행정구역 면적	산업경제비	· 인구수	
	지역경제비	· 사업체종사자수			
농수산개발비	관광진흥비	· 관광지 면적 · 인구수	민방위비	· 민방위대원수	
	· 농업비	· 경지면적 · 주요기축두수 · 농업종사자수			
	· 수산업비	· 어장 면적 · 수산업종사자수			
안전관리비	· 임업비	· 임야 면적 · 산림육성 면적			
	· 임업비	· 산림육성 면적			
홍보 및 문화 체육비	· 재난관리대상시설수 · 소방관서수 · 인구수				
	· 공공청사보유 면적 · 인구수 · 공무원수 · 지방의원수				